사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6

제출일자	2004. 3. 17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의결주문

사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하수처리장이 건설된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가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함으로서, 하수도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하수도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2조)

○ 공공하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나. 하수도지방공기업 관리자 지정(안 제4조)

○ 지역개발국장

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8조)

라. 일반회계의 경비부담 범위 규정(안 제10조)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 나·마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사용료

○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마.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12조)

바. 지방채의 발행 근거마련(안 제13조)

사.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 기한 명시(안 제18조)

○ 매 사업년도 1월1일부터 6월말 : 당해년도 8월말까지

○ 매 사업년도 7월1일부터 12월말 : 익년도 2월말까지

4. 주요토의과제 :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예산(2004년) : 329억원

1) 세입 : 자체수입12억, 양여금224억, 기타93억

2) 세출 : 하수도관리86억, 환경시설사업소운영12억, 하수처리장건설210억, 삼천포하수처리장운영13억, 인건비8억

다. 합　　의 : 기획담당관

라. 기　　타

1) 입법예고(2004.2.10 ~2004.3.5)결과, 특기할 사항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사천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연도) 하수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사천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사천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 나 · 마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사용료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하수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당해년도 8월 말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 7.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118,846,488,863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관계법령발췌

지방공기업법

第5條 (地方直營企業의 設置) 地方自治團體가 地方直營企業을 設置·經營하고자 할 때에는 그 設置·運營의 基本事項을 條例로 정하여야 한다.

第11條 (企業管理規程) 管理者는 法令 또는 條例나 規則에 違反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地方直營企業 業務에 관하여 企業管理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第13條 (特別會計) 地方自治團體는 第2條에 해당하는 事業마다 特別會計를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同條에 해당하는 事業을 2이상 經營하는 地方自治團體에 있어서 第7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者 1人을 두는 경우에는 그 2이상의 事業에 醫療事業에 있어서는 病院마다 하나의 特別會計를 둘 수 있다.

第17條 (출자 등) ①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나 다른 特別會計는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에 필요한 出資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資를 받은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는 利益狀況에 따라 豫算에 의하여 前年度의 利益金의 一部를 그 出資한 會計에 納付할 수 있다.
③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행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第19條 (地方債) ①地方自治團體는 다음의 事由가 있는 때에는 收入을 얻은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의 負擔으로 地方債를 발행할 수 있다.
1. 經常的인 運轉資金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回轉基金의 財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建設 또는 改良費에 충당하거나 類似事業의 買收資金으로 필요한 때
②特別市·廣域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條에 規定된 사업의 投資財源 확보와 地域開發을 위한 基金造成을 위하여 地方債를 발행할 수 있다.

第27條 (收入金마련 支出) 事業量의 增加로 인하여 經費에 不足이 생긴 때에는 管理者는 당해 事業量의 增加로 인한 增加收入에 상당한 金額을 그 增加收入에 관련된 業務의 直接費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管理者는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地方議會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34條 (會計의 統轄) ①地方直營企業의 管理者는 그 企業의 會計業務를 統轄한다.
②管理者는 會計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企業出納員과 現金取扱員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會計關係公務員을 둘 수 있다.
③第2項의 會計關係公務員은 당해 企業에 종사하는 公務員중에서 管理者가 任命한다.

第36條 (計理狀況의 報告) 管理者는 每月末日 現在로 試算表·資金運用報告書와 당해 企業의 計理狀況을 明確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書類를 作成하여 다음 달 20日까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48條 (辨償責任) ①管理者 또는 그 代理者나 分任者가 歲入의 徵收, 支出의 原因이 되는 契約 기타의 行爲, 物品의 管理 및 支出의 行爲를 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그 地方自治團體에 損害를 미친 때에는 辨償의 責任을 진다.
②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나.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다. 지역개발등에 따른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의한 시설의 유지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2. 당해 사업에만 적용되는 경비
가. 궤도사업
당해궤도사업용차량외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궤도의 유지·수선 및 개량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통혼잡의 완화등을 위한 궤도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
나. 하수도사업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다.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공사완공후 관리기관에의 인계 또는 분양완료시까지 소요되는 기본경비
라. 의료사업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의 진료, 전시·사변·재해등으로 인한 구급, 구호대상자의 구호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 집단검진·의료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보건위생행정에 소요되는 경비, 벽지·도서등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 의료보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지역에 있어서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특수한 의료 시설 및 연구등에 소요되는 경비
마.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비로서 당해 사업별로 조례가 정하는 경비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제14조제1항)

第2條（적용범위）

②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經常經費의 5割이상을 經常收入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地方直營企業·地方公社 또는 地方公團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을 적용할 수 있다.

1. 民間人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住民福利의 增進에 기여할 수 있고, 地域經濟의 活性化나 地域開發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同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第14條（獨立採算） ①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에 있어서 그 經費는 당해 企業의 收入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方直營企業의 經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나 다른 特別會計가 負擔金 기타의 方法에 의하여 負擔한다.

1. 經費의 性質上 당해 地方直營企業의 收入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經費
2. 당해 地方直營企業의 性質上 그 經營에 隨伴한 收入만으로 充當하는 것이 客觀的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經費

②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는 災害·復舊 기타 특별한 事由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豫算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나 다른 特別會計로부터 財政的 支援을 받을 수 있다.